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함.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에 맞춰 제조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허가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
(안 4조의2 신설)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 기존 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의 틀
(자본금, 시설기준 등)은 유지하되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감안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시설기준 : 연간 40만L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액상제조,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출 것
-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

2)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조업 허가 가능하며 자본금 기준 및 안전기준 신설 등으로 저품질 제품 생산 및 유통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13. ~ 3. 25.) 예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및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액체형태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액체형태 담배제조업허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1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40만L(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액상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3.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
4.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고정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 시설기준 · 기술인력 ·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 가공부터 껀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 설을 갖추는 것. 다만, 연간 100억개 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 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 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향온향습설비 · 연기 성분측정장치 · 공기희석률측정기 · 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 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p>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4조의2(액체형태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액체형태담배제조업허가의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본금 : 100억원 이상일 것</u> <u>2. 시설기준 : 연간 40만 리터(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니코틴 원액 등 원료 가공부터 액상 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u> <u>3. 안전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할 것</u> <u>4.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u>

현행	개정안
	<p>5. <u>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과정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와 연구실을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u></p>
제4조의2 (생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4조의3 (생략)	제4조의4 (현행 제4조의3와 같음)
제4조의4 (생략)	제4조의5 (현행 제4조의4와 같음)
제4조의5 (생략)	제4조의6 (현행 제4조의5와 같음)
제4조의6 (생략)	제4조의7 (현행 제4조의6와 같음)
제4조의7 (생략)	제4조의8 (현행 제4조의7와 같음)
제4조의8 (생략)	제4조의9 (현행 제4조의8와 같음)
제4조의9 (생략)	제4조의10 (현행 제4조의9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연 락 처	(044) 215 - 5176